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- 우수 자원봉사자에 혜택 부여 근거를 신설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 부여 근거 마련(안 제17조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,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구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
-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 가맹점 제도를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,
- 연간 일정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